

1998. 7.

## 제정 및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충주시재산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충주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자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안	'98. 7. 14	'98. 7. 15	'98. 7. 21	'98. 7. 21	민방위재난 관리과장
충주시주차장조례증개정 조례안	.	.	.	.	교통행정 과장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 수조례증개정조례안	.	.	.	.	문화회관 관리소장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증개정조례안	.	.	.	.	체육시설 관리소장

## 2. 제안설명요지

### 가.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1) 제안이유

-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적립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 조치등에 사용하므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코자 함.

#### 2) 주요골자

-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 기금운용의 수익금
- 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등 재난관리체계 확립

## 나. 충주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차수요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차장운용 시기등을 명시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임.

### 2) 주요골자

- 유료운영 : 월요일부터 토요일
- 무료운영 : 일요일, 구정·신정, 추석 연휴기간
- 주차요금 : 2급지 (1구회 30분기준)  
400원 → 300원으로 100원 인하

## 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회관의 사용료등 징수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제7차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추진 회의에서 확정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천재지변이나 시의 사정으로 취소시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일전 7일전에 취소요구시 전액 반환
- 사용일전 7일이내에 취소요구시 50% 반환

## ④.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제7차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 반환조항중 일부 조항이 불합리 하다고 권고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사용일전 7일전에 취소요구시 사용료 전액반환
- 사용일전 7일이내에 취소요구시 50%반환

## 3.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

### 가.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등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 기타 재난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적립 코서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고 주민은 재난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건물, 시설물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을 강제 대피시키는 등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충주시주차장조례종개정조례안**

- 신정, 구정, 추석연휴 기간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토록 하는 것은 고향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애향심을 갖게하고 고향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할수 있으나
- 일요일 무료주차와 2급지 4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되어 시수입이 감소하게 되므로 주차료 인하에 따른 주차이용대수 증가등에 관한 분석이 필요함.

#### **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종개정조례안**

- 사용을 철회한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것은 부당하다고 제7차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 추진 회의에서 권고 받은 사항으로
- 사용계약후 해약시기 및 사유별로 사용료를 반환토록 조정하므로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코져 하는 것임.

#### **라.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종개정조례안**

- 사용을 철회한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것은 부당하다고 제7차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 추진 회의에서 권고 받은 사항으로
- 사용계약후 해약시기 및 사유별로 사용료를 반환토록 조정하므로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코져 하는 것임.

### **4. 질의·답변 요지**

#### **가).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질의 )

- 법56조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이 조례제정 전에 가능한가?

☞ 답변

- 지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 의회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55,365천원을 확보하게 되었음.

[ 질의 ]

- 현재 확보된 재난관리기금보다 많은(큰) 재해가 발생되었을 시 대처 방안은?

☞ 답변

- 확보된 금액을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대체 하겠음.

[ 질의 ]

- 재난 발생시 대피 명령에 따른 이주 대책비의 지원은?

☞ 답변

- 영세민에 한하여 응자 지원하게 됨.

4.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질의 ]

- 주차장의 1급지와 2급지 구분은?

☞ 답변

- 주차대수와 이용도를 감안하여 정하였음.

[ 질의 ]

- 6조의 2 제2항 무료운영 규정외에 법정 공휴일을 모두 무료 운영하는 방안은?

☞ 답변

- 법정 공휴일에 무료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봤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규정하지 않았음.

[ 질의 ]

- 성실납세자에 대한 무료주차방안(조례규정)은?

■ 답변

- 검토중이며 세무서에 확인결과 전국에 100여명 우리시에는 2~3명 정도이므로 행정지시를 통하여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주차장료이용권을 사용도록 하겠음.

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 질의 }

- 시설사용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우리시가 지적받은 사항은?

■ 답변

- 우리시에서 지적받은 사실은 없으며 전국적인 표본조사 결과 권고사항임.

라.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 질의 }

- 충주공설운동장(잔디구장)의 사용허가 일수가 적어 이용객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개선 방안은?

■ 답변

- 잔디보호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 하겠음.

5. 심사결과

가.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나. 충주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 수정의결(수정안:별지1)

라.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 수정의결(수정안:별지2)

## 6. 복이

- 가.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나. 충주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 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 라.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 마.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수정안
- 바.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수정안

##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충주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충주시재난관리기금계좌를 설치한다.

③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재난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 등(충주시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등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2. 영 제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충주시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3.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4. 재난이 발생한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5.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영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재무회계관리) ①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총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주차장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영주차장의 운영) ①시에서 운영하는 노의공영주차장은 충주천공영주차장과 금능공영주차장으로 한다.

②공영주차장 유료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고, 일요일, 신정, 구정, 추석연휴기간은 무료운영하며, 기타 공적인 행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무료운영할 수 있다.

③주차장관리요원 근무시간은 [별표 1]의 주차요금징수시간과 같다.

④기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공영주차장요금표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1구획 30분 기준	월 정 기 주 차	
		주 간	야 간
1 급지	500원	75,000원	56,000원
2 급지	300원	45,000원	30,000원

- 비 고 : 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접용구획의 수에 따라 정수한다.
3.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4월 ~ 10월 : 09:00 ~ 21:00  
나. 11월 ~ 3월 : 09:00 ~ 20:00
4.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위치에 따라 지정하되, 노외공영  
주차장의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급지 : 충주천공영주차장  
2급지 : 금능공영주차장
5.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주차요금은 당해시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시장이 정하되,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  
을 적용할 수 있다.

충주시 조례 제 호

##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일 전에 취소요구시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일 최소 7일전에 취소요구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사용자가 사용일 전 7일이내에 취소요구시 50페센트를 공제한후 잔액을 반환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하고자 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을 “시설이용일 7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며 시설이용일 전일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5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후 잔액을 반환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 ■ 조례명 : 충주시구민학습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2호중 '사용일 최소 7일전에'를 '사용일전 7일전에'로 한다.

### < 수정안 대비표 >

## [별지 2]

### ■ 조례명 : 충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총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제1항제1호중 "시설이용일 7일이전에"를 "사용일전 7일전에"로하고, "시설이용일 전일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5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후 잔액을 반환한다."를 "사용일전 7일이내에 추소 요구시 50퍼센트를 공제한후 잔액을 반환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 (사용료의 반환) ① (생략) 1. 사용하기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하고자 할때 사용료의 100분의 50율 반환	제15조 (사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1. 사용이용일 7일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잔액을 반환하며, 시설이용일 전일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5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5조 (사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1. 사용이용일 7일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잔액을 반환하며, 시설이용일 전일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5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후 잔액을 반환한다.
2. - 4. (생략) ②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